

# 항만물류대학원 학칙

## 제 1 장 총 칙

제 1조(목적) 항만물류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은 대한민국 민주교육의 근본 이념에 입각하여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학문의 심오한 이론과 광범위하고 실천적인 운용지식의 교육을 통해 학술연구를 위한 능력과 독창력을 함양시키는 것은 물론, 지도적 인격을 갖춘 실무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그 설립목표를 둔다.

제 2조(교육목표) 경영학을 학문적 기반으로 물류산업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과 응용에 관련된 학문을 연구하여 산업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고급인재를 양성함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 3조(과정) 본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한다.)을 두며 수업은 야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 2 장 학과(전공) 및 정원

제 4조(학과(전공)) ① 본 대학원에 설치되는 각 과정의 학과(전공) 및 학생정원은 <별표1>과 같으며, 제1조의 목적과 산학협동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고경영자과정 등 공개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2019.12.09)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원에 입학, 편입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2.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3.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제 5조(학과의 설페) 본 대학원의 학과(전공)설치와 폐지는 입학정원 내에서 가야 대학교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제 3 장 입 학

제 6조(입학시기) 대학원의 입학시기는 매 학기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 7조(지원자격) 본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와 취득 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에 준하는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 8조(본교재직 전임교원의 지원자격)** 본교의 전임교원은 학문상 부득이한 경우에만하여 입학허가를 허가받을 수 있으며, 휴직한 후 입학할 수 있다.

**제 9조(입학전형)** 입학 전형은 필답고사(전공, 외국어, 실기) 또는 서류전형으로 행한다. 다만, 총장은 필요에 따라 일부과목을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전형할 수 있다.

## 제 4 장 등록 및 학적

**제10조(등록)** ① 학생은 대학원 과정별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학기이상의 정규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수업연한 이내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 그 학점이 3 학점 이하일 경우 학점등록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수료자의 등록)** ①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라 함은 학칙에 의한 수업연한이 경과하고 이수하여야 할 학점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당해 학기에 논문준비 등을 위해 수료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휴학)** 휴학은 질병, 출산, 육아 또는 기타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병역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 <2016. 12. 22>

**제13조(복학)** 휴학한 학생이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매학기 등록기간 이전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제적된다.

- ① 휴학기간이 경과하여도 복학하지 않는 자
- ② 등록 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은 자
- ③ 기타 대학원위원회의 징계 결정으로 제적된 자
- ④ 질병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학업을 계속 할 가망이 없는 자

**제15조(자퇴)** 자원퇴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의 허락을 받아 자퇴원을 제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6조(재입학)** 제적 또는 자퇴한 학생이 재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을 뺀 범위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징계로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할 수 없다.

**제17조(편입학)** 일반 편입학은 여석이 있을 때에 한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 제 5 장 학점, 수업연한, 수료, 전과, 교육과정

**제18조(학점인정 일수)** 타당한 사유없이 학기중 수업일수의 1/30이상을 결석한 학생에 대해서는 소정과목의 학점을 인정할 수 없다.

**제19조(성적평가)** 학업성적의 등급과 점수 및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점수)	(평점)
A+	95 ~ 100	4.5
A	90 ~ 94	4.0
B+	85 ~ 89	3.5
B	80 ~ 84	3.0
C+	75 ~ 79	2.5
C	70 ~ 74	2.0
F	69이하	0

**제20조(이수단위 및 인정평점)** ① 교과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1학기 15시간 이상의 강의를 학점으로 한다.

② 과목별 이수인정 학점은 C학점 이상, 전과목 평점평균은 3.0(등급 B학점) 이상 되어야 해당학기를 수료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21조(학점인정)** ① 재입학한 학생의 기취득학점은 인정된다.

② 편입학한 자가 원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중 편입학한 대학원의 교과목과 유사한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를 인정 할 수 있다.

**제22조(수업연한)** ① 본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5학기로 한다.

- ② 국내·외 대학원의 학점인정을 받은 자 또는 학점의 조기 취득, 학문의 탁월성이 인정되어 학위수여요건을 조기에 충족시킨 자는 수업연한을 석사과정은 6월 이내 단축할 수 있다. 단,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③ 재학연한은 5년으로 하며, 재입학자의 재학연한은 전 재적기간을 통산한다. 단,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3조(학년도 등)** ① 대학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 ② 정기휴업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및 개교기념일로 한다.
  - 1. 하계방학, 동계방학 기간은 따로 정한다.
  - 2. 임시휴업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제24조(이수학점)** ① 석사학위과정 학생이 재학중 취득하여야 할 총 학점수는 다음과 같다.

- 1. 논문을 제출하여 학위과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이수학점은 26학점(논문지도학점 포함)으로 한다.
- 2. 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를 받고자 하는 자의 이수학점은 32학점(특수연구 포함)으로 한다.
- ② 각 과정의 학생은 교과학점 이외에 학위취득을 위해 연구지도를 받아야 한다.
- ③ 본 대학교와 협정관계에 있는 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은 인정될 수 있다.

**제25조(수강학점)** ① 매학기 8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학점까지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으나, 그 절차와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② 학과장은 학생 수강능력을 고려하여 수강학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전공변경)** 전공변경은 동일학과 내에 한하며 각 과정의 2학기초에 신청하여야 하며, 새로운 전공의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 27조(수료시기)** 각 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 말로 한다.

**제 28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매학기 15주)로 한다.

**제 29조(교육과정)**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 6 장 자격시험

**제30조(자격시험 종류)**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한다.

**제31조(자격시험)** ①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자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자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각 과정의 수료일로부터 석사과정은 5년으로 한다. 다만, 병역의무로 인한 복무기간은 제외한다.

③ 자격시험 합격의 유효기간 경과자는 자격시험에 재응시하여 합격한 후 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 제 7 장 학위논문

**제32조(학위논문 제출자격 및 심사)** ① 석사 학위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수학 기간내 소정의 학점을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
2. 학업성적이 종합평균 평점 3.00이상인 자
3. 학과장 및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4.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② 학위논문 심사는 교원 또는 학계의 권위자중에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이 심사 및 구술고사를 실시하며, 심사위원의 수는 석사과정은 3인으로 한다.

③ 학위논문 제출을 원칙으로 하나 논문제출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며, 전공의 특성에 따라 수료를 위한 최소 이수학점을 취득한 후 논문제출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가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 후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면 논문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33조(학위논문 제출)** 학위논문 제출은 다음 각 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지도교수 선정
- 연구계획서 제출
- 논문발표 및 심사
- 학위논문 제출

**제34조(학위논문 심사료)**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석사학위 논문의 제출자로부터

터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 8 장 학위수여

**제35조(학위등록 및 학위수여)** 각 학위과정별 학위는 이수하여야 할 학점을 취득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에 합격한자 또는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 후 추가로 6학점을 취득하여 논문심사를 면제받은자에게는 <별표 2>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36조(학위종별)** 학위종별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7조(학위 수여자격)** 석사학위 수여자격은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로 한다.

- ① 26학점 취득자(논문지도학점 포함)
- ② 취득학점의 평균평점이 3.00이상인 자
- ③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④ 1학기 이상 논문연구지도를 받고 수학연한에 해당하는 학기이상 정규등록을 한 자
- ⑤ 논문심사(시험)에 합격한 자. 단,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 후 추가로 6학점을 취득한 경우 이를 면제함
- ⑥ 학위수여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38조(학위수여자 사정)** 학위수여자를 결정하는 사정은 본 대학원 위원회에서 실시하며 학위 수여 대상자를 결정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학위수여 및 구분)** 본 대학원에 수여하는 학위는 경영학 석사학위를 수여한다.

**제40조(학위 수여)** 학위수여는 본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수여하며, 학위종별은 별도로 정한다.

**제 41조(학위기 양식)** 학위기는 별지1과 같이 한다.

**제42조(학위수여 취소)** 총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그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제43조(학위복장 규정)** 석사, 박사 학위복의 학위종별 후우드 색깔은 다음과 같다.

① 후우드 색깔

전 공	해당학위	후우드색깔
물류학	경영학석사	갈색

② 후우드 내부의 색깔은 청색, 백색, 홍색으로 한다.

③ 학위모 수술 색깔은 석사모는 백색으로 한다.

## 제 10 장 학생지도 및 장학금

**제44조(학칙준수)** 학생은 본 대학원의 학칙과 각종 내규를 준수하고 담당교수의 지도에 따라 연구에 정진하여야 한다.

**제45조(장학금)** 품행이 방정하고 학력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장학금이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6조(징계)** 학생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할 수 있다. 단,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 11 장 직 제

**제47조(대학원장)** 대학원장은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8조(조직)** 본 대학원에는 원장 외에 각 과정의 학과마다 교원(조교는 제외한다.)을 둘 수 있다.

**제49조(학과장 또는 전공주임)** 각 학과(전공)에는 학과장(전공주임교수)을 두며 학과장은 그 학과의 수업과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제 12 장 위원회

**제50조(대학원위원회)** 본 대학원에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원장은 그 위원장이 된다.(개정: 202003.27)

**제51조(대학원위원 임기)** 대학원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제52조(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

- ① 각 대학원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학과와 전공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대학원에 의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5. 학위의 전공 영역에 관한 사항
  6. 기타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② 대학원위원회는 대학원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 심의한다.

제53조(위원회 회의 및 의결) 본 대학원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13 장 기 타

제54조(위임규정) 이 학칙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적용한다.

제55조(세부 시행규정) 본 대학원 학칙 시행을 위한 세부 시행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6조(학칙개정) 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정안을 최소 7일 이상 공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대학원위원회,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심의를 거치고, 법인이사회 의결 후 확정·시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신설:2019. 12.09)

1. 법령 및 정관 등 상위 규범의 개정에 따른 경미한 내용의 개정
2. 미미한 내용 및 명백한 오류 수정을 위한 내용의 개정
3. 단순한 자구수정을 위한 개정

##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항만물류대학원 입학정원표

계열	학과(전공)	입학정원
인문사회	물류학	20

(별지 1)

석 제 호
<b>학 위 기</b>
성 명 19   년   월   일생
위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고 대학위원회의 심사에 합격하여                      학 석 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제목 :
<b>가야대학교 항만물류대학원장 (학위명) 0 0 0</b>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20   년   월   일
<b>가 야 대 학 교 총 장 (학위명) 0 0 0</b>
학위수여번호 : 가야대                      (석)

<별표 2>

항만물류대학원 전공별 수여학위명

대학원명	학과(전공)	석사학위
항만물류대학원	물류학	경영학석사